



Codex 아시아 지역 Workshop을 참석하고

김 용 상 | 농림부 가축위생과 DVM, Ph D

저는 미국 농무성 식품안전검사처(FSIS)가 2002.1.17~1.19(3일간) 홍콩에서 개최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아시아지역 Workshop에 한국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였다. 본 워크샵에는 아시아 지역 15개 국가, 50여명이 참석하여 Codex 업무와 관련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였다. 본인은 본 워크샵이 식품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하고 있는 요즘에 식품의 기준·규격 등에 관한 국제기준을 설정하는 기구인 Codex에서 최근 무엇이 논의되고 있고, 쟁점사항이 무엇인지 등을 축산식품 관련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전국의 수의직공무원, 식품위생업무 관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참석결과를 보고형태로 기술하고자 한다.

회의개요

본 회의의 목적은 아시아 지역 국가의 Codex 참여를 높이고, 지역국가의 Codex 담당자들간의 network 구성을 통한 대화 채널의 구성 및 Codex의 주요 issue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서 주요 논의내용은

- ① WTO/TBT 및 SPS와 Codex의 관계,
- ② Codex 지침에서의 동등성(equivalence),
- ③ 추적성(traceability),
- ④ 위해도 분석(특히, precautionary principle),
- ⑤ Biotechnology의 정의와 표시,
- ⑥ 식품첨가물에 대한 일반기준(GSFA)이었다.

날짜	의 제
1.17(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risk assessment ▶ Working Principles of Risk Analysis ▶ Equivalence Legal Analysis - SPS/TBT Agreement ▶ WTO/Equivalence ▶ Developing a Labelling Scheme for Genetically Modified Food in Hong Kong
1.18(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ceability : USA, EU - Codex Consideration of Issues - US Industry and Identity Preservation - Analysis of EU Legislation
1.19(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o-tech Labelling ▶ General Standards for Food Additives

의제별 세부 논의 사항

WTO/SPS 분석

▶ WTO 협정은 기본적으로 3가지 개념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첫째, Tariff only system로 WTO는 관세만을 무역의 장벽으로 인정(GATT 2, 11조), 둘째, Non-discrimination Principle로 최혜국대우(GATT 1조), 내국민대우(GATT 3조)로 차별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 일반예외(General exception)(GATT 20조)로 예외인정 사항이다.

국제무역에 있어 농업제품과 여타 제품간의 기본적인 차이는 농업제품에는 수많은 위생관련 사항(health issues)이 있다는 것이다.

▶ SPS협정은 GATT 20조의 B항을 설명하기 위하여 즉, 일반예외조항을 설명하기 위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회원국의 의무와 권한을 정하고 있다. 동 협정의 기본적 개념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PS measure)” 및 “적정보호 수준(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이다.

▶ SPS조치는 식품, 음료 또는 사료내의 첨가제(additives), 오염물질(contaminants), 독소(toxins) 또는 질병원인체(disease causing organism)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SPS 조치에 있어서 핵심적 개념은 “과학적 증거(scientific evidence)”와 “위험평가(risk assessment)”이다.

▶ 적정보호수준(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ALOP))은 “The level of protection deemed appropriate by the Member establishing a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로 Annex A:5에 정의되어 있는데 이는 “acceptable level of risk”로 불리기도 한다. 이는 SPS 조치의 수준이 아니며, 과학적 판단(scientific judgment)에 의한 것이 아닌 사회적 판단(social judgement)에 의해 설정되며, 유사한 위해도에 대하여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 회원국은 ALOP를 결정하고, 국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PS조치)도 입할 권한이 있는 반면, 회원국은 SPS조치의 도입은 “risk assessment”, “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및 “scientific principle”에 근거하여야 하며, 과학적으로 정당화 할(justificable) 수 있는 경우에만 차별대우가 가능하며, 필요 이상의 무역을 제한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 Codex 규격은 국제규격으로 인정받음. 또한 이는 “국제기준을 준수할 경우 혜택을 주는 것인 Safe-harbor 조항(3.2조)”이기 때문에 Codex 규격을 적용한 조치에 대하여는 제소 불가능하다. 또한 회원국은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으며, 적정보호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는 Codex 규격보다 강한 규격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WTO/TBT 분석

▶ TBT협정은 GATT의 의무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차별이 있을 수 없으며, SPS협정의 대상은 적용대상이 아니며(1.5조), 특정 조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동 협정은 많은 빈 공간을 가지고 있어 분쟁 해결에서 볼 수 있는 판례법(case law) 구조이다. SPS도 판례법 구조이나 TBT보다는 많은 부분을 정하고 있다.

대환수외

▶ TBT 협정에서 쓰이는 용어중 “기술규격(technical regulation)”은 강제규격, “표준(standard)”은 자율규격이다.

▶ 회원국은 “합당한 목적(legitimate objective)”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requirements), “소비자 피해방지(Prevention of consumer deception), “국민의 건강 보호(SPS에 해당하는 위해도에 대한 것은 제외)(Protection of human health or safety,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or the environment)”이며, 이러한 사례는 추가로 확산될 수 있는 개념의 것으로 예시한 것 이외의 목적을 설정 가능하다. 한편 “국내 산업의 보호”이라는 목적은 “합당한 목적”이 아니다(3조).

▶ 회원국은 여타 회원국을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합당한 목적을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합당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위해도(risk of non-fulfillment of legitimate objective)를 평가하여야 한다. TBT 관련 기준을 설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관련 국제규격을 적용하여야 하나, 합당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비효율적이거나 부적절한 경우는 예외일 수 있다.

▶ TBT 협정에서는 특정 국제규격 제정기구를 정하고 있지 않다. 참고로 본 협정에서 Safe-harbor 조항은 2.5조로 2.2조의 합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규격을 따르는 경우이다.

위해도 분석의 WHO/FAO 자문

▶ 위해도 분석의 일반 현황과 FAO/WHO 전문가

그룹의 작업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으며, 위해도 분석(risk analysis)은 위해도 평가(risk assessment), 위해도 관리(risk management) 및 위해도 정보 전달(risk communication)로 구성되며, 위해도 평가는 위해요소 확인(hazard identification), 위해요소 결정(hazard characterization), 노출량 평가(exposure assessment) 및 위해도 결정(risk characterization)으로 구성된다.

위해도 분석의 작업 원칙

▶ Codex 일반원칙분과위원회에서 작업중인 “위해도 분석작업원칙”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 사항은 위해도 분석의 적용범위(Scope) 및 예방원칙(Precaution)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 제24차 Codex 총회('01년)에서는 적용 범위를 Codex 내부로 제한하여 차기 총회('03년)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일반원칙분과위원회(CCGP)에 요청하였다.

▶ 2001년 12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작업반회의에서 수정안을 논의하였는데, 본 회의에는 22개 회원국과 11개 INGO가 참석하여 많은 논란을 벌여 대부분은 합의하였으나, 예방(precaution)에 대하여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본 회의결과에 의거 수정안(CX/GP 02/03)이 작성되었으며, '02.02.28까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

▶ Codex에서 회원국을 위한 위해도 분석 원칙은 따로 개발할 예정으로, 차기 CCGP 회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주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와 긴급사항 등에 대한

원칙을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WTO의 동등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

▶ 동등성(equivalence)과 관련하여 SPS 협정에서는 Article 4.1에서 회원국은 “동등한 SPS 조치(equivalent SPS measures)”를 받아들일 의무를 부과하고, Article 4.2에서 회원국은 “동등성 협의(equivalency negotiations)”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TBT 협정에서는 Article 2.7은 강제조항은 아니라 강력히 권고하는 것으로 회원국은 “동등성 협정을 긍정적으로 고려(positive consideration to accepting equivalent TBT measures)”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TBT협정에서의 동등성은 SPS 협정 논의 결과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TBT 협정의 경우 적절한 목적은 과학적 근거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동등성 인정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은 수출국은 수출품이 수입국의 제품의 관리 규정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보장하는 것이다.

▶ UR에서 논의시 동등성 관련 조항은 Cains group의 주장(수출국의 조치는 수입국에 적합하며,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수입국이 생각한다면, 수입국이 입증의 책임이 있음)과 일본, 스칸디나비아 국가측의 입장(수출국은 수입국의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하여야 함)의 협상에 의하여 현재의 조항이 만들어졌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국제협정에서 증명의 책임은 관련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측에 있다.

▶ 동등성 협정과 관련하여 EU·미국의 수의 동등성 협정(Veterinary Equivalency Agreement)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동 Vet Agreement에서는

아래의 4 단계의 협의과정(4 Step Consultative Process)을 규정하고 있다. TBT의 경우 최종 제품 규격에 의한 관리의 경우 동등성 적용이 어려움을 주장하고, 시험에 의한 결과의 경우 수량으로 표현되어 동일하기 전에는 동등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Step 1 : Identification of the sanitary measure for which recognition of equivalency is sought

Step 2 : Explanation by the importing party of the objective of its sanitary measure, including an assessment, as appropriate to the circumstances, of the risk or risks, that the sanitary measure is intended to address, and an identification, by the importing Party of its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protection

Step 3 : Demonstration by the exporting party that its sanitary measure achieves the importing Party's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protection

Step 4 : Determination by the Importing Party whether the measure achieves its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식품안전제도의 동등성 : Codex 지침과 이의 적용

▶ 미국의 H. Michael Wehr(FDA)가 Codex의 동등성 지침 현황, WTO/SPS위원회에서 합의된 동등성 관련 합의문 및 가상 상대에 대한 사례연구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Codex의 관련 문서는 다음과 같다.

-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equivalence agreements regarding food import and expor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합의됨)
- Guidelines on the judgement of equivalence of sanitary measures associated with food import and expor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5단계) - SPS 조치에 대한 동등성
- Guidelines on the judgement of equivalence of technical

regulations associated with food import and expor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3단계) - TBT 조치에 대한 동등성

홍콩의 GMO의 표시 제도 개발

▶ Yuk-yin Ho(홍콩 식품환경위생부)는 홍콩의 GMO 표시제도 도입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홍콩은 GMO 표시에 대한 공청회(2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련 상세 자료는 www.info.gov.hk/fehd/safefood/gmf/index1.html에 있으며, 현재는 경제효과분석(economic impact assessment)중으로, 아직 도입기간 등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한다.

추적성(traceability)

▶ Codex 내에서 traceability 논의 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추적성은 원산지, 가공기록 및 유통기록과 관련되어 있다.

▶ 먼저 일반원칙분과위원회에서 주요 논의 내용은 위해도 관리에서의 traceability는 이행 가능성(practicability)과 실행 가능성(feasibility)을 고려하여야 하며, 소비자에 대한 신뢰와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며, 책임(liability) 및 교정(redress)에 활용 가능하여야 한다는 점등이다.

▶ 현재 “가축사료에 관한 정부간 작업반”은 작업방향에 대하여 총회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며,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정부간 작업반”은 아직 합의된 바 없으며, 현재 프랑스와 미국이 낸 문서가 의견 수렴 중이라 한다.

▶ “Codex 수출입 검사 및 인정 분과위원회(CCFICS)”는 “traceability”는 terms of reference

내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며, Codex 사무국에 의하여 Traceability in the context of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s(CX/FICS/02/INF.2)가 발표된 바 있다.

추적성 - EU 법령 분석

▶ 미국의 Terri Dunahay(FAS, USDA)은 EU에서 제안한 추적성에 대한 분석내용을 발표하였는데, 미국은 알 수 없는 예측되는 위해도에 대한 조치임을 주장하는 등 EU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현하였다.

▶ 이와 더불어 DNA 또는 단백질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표시하도록 하는 점, 표시에서 EU가 치즈 제조에 사용하고 있는 processing aid와 효소의 제외 등에 대한 불만사항을 지적하였다.

유전자재조합 표시

▶ 미국은 유전자재조합 표시를 강제화하는 것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GMO free”라고 표시 할 수 없음(cannot label “GMO free”)이라고 강한 표현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 일본 대표는 비공식적으로 표시의 threshold value를 5%로 하는데 따라 10%의 가격상승 요인이 발생함을 밝히고(미국도 10%정도임을 설명), 우리나라가 threshold value를 3%로 정한 이유와 비용 상승을 문의한 바, 우리나라에는 유전자재조합표시관련 위원회가 있으며, 해당 위원회를 소개하기로 하였다.

▶ 미국 및 일본은 IP(Identity Preservation)에 따른 가격상승결과에 대해 연구가 진행중임을

대한수의

언급하여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아국의 경우 IP에 관한 경제 효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련자료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연구 등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Codex 표시분과위원회 작업 현황

2000.5 표시의 대상(GMO 포함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개발되는 문서는 지침(guideline)으로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0년 회의에서 3가지 입장 확인하였으며,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첫째 입장은 “성분, 영양, 사용 목적이 변화한 경우만 표시”하는 경우, 둘째 입장은 “검출 가능한 DNA 또는 단백질이 있는 경우 표시”하는 경우, 그리고 셋째 입장은 “모든 유전자재조합 제품을 이용한 경우 표시”하는 경우이었다.

01년 입장의 변화가 없었으며, 2002년 관련 회의와 연계하여 1일을 따로 잡아 추가로 논의할 것임을 합의하였다.

유전자재조합의 정의는 Codex 표시분과위원회 논의와 별개로 진행중이며, Codex의 표시 규격 설정의 어려움은 기존에 표시 규정을 갖고 있는 각국의 표시 규정의 차이에서 발생함.

▶ 미국

FDA는 1992년 유전자재조합 제품을 사용한 식품이 다른 식품보다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가 없으며, 전통적인 육종에 의하여 개발된 품종을 사용한 제품보다 위해하다고 고려할 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유전자재조합에 의하여 성분 또는 영양

가치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① 상응하는 일반 품종과 인정되는 차이가 있는 경우, ② 안전성(safety) 또는 용도의 차이를 유발하는 경우, ③ 알레르기유발성분(allergen)이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GMO를 사용한 식품이라도 이를 표시할 의무는 없으며, 표시는 강제가 아니며,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 대하여, “유전자재조합 원료를 사용하지 않음(not products of biotechnology)”로 표기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FDA는 관련 지침을 발간한 바 있으며, 캐나다, 남아공이 유사한 접근을 하고 있다 한다.

▶ EU(기준)

1998년부터 GMO 표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로, 검출 가능한 DNA 또는 단백질이 있는 경우 모두 GMO로 표시하고 있으며, 1%의 threshold value 허용하고 있다.

EU(수정안)은 유전자재조합제품을 포함하는 모든 제품(유지, 정제 당분 포함) 표시(예외: processing aids or enzyme)하는 것으로서 EU시장에 들어가는 첫 제품은 GM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일본

일본은 2001.4월부터 GMO 표시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옥수수, 대두, sprout products 24종이 표시(감자 추가 예정) 대상이다. 표시는 “GMO 함유”, “GMO 비함유”, 또는 “GMO 비분리”로 표시하며, 가공도가 높은 식품은 예외로 하며, Threshold는 5%이다. 표시는 주원료 3위내

제품에 대해 적용하며, random testing 후 검출시 분리유통(identity preserves, IP) 문서 요청토록 하고 있다.

▶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2001.7.13부터 GMO 표시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적용대상 품목은 옥수수, 대두, 콩나물 등으로 2002년 감자 추가 예정이며, DNA 또는 단백질 존재 시 표시토록 하고 있다. 표시는 주원료 5위내 품목에 대하여 적용되며, 표시는 “재조합 옥수수(recombinant corn)”와 같이 표시하며, “non-GMO”으로 표시할 수 없도록(cannot label food as “non-GMO”) 하고 있다. 특히, 옥수수 및 대두는 ① DNA 또는 단백질 불검출, ② 모든 제조단계에 대한 분리유통 증명서, ③ 수출국의 재배하지 않고 있음에 대한 증명서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 호주/뉴질랜드는 2001.12.7부터 GMO 표시 규정을 시행중이며, 내용은 기존의 EU와 유사하다.

▶ GMO 표시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점이 많이 있는데, 공정근거 표시에 있어 GMO는 원료를 개발한 방법이며, 이를 근거로 표시하여야 한다면, 어떠한 방법을 표시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여지가 있다. 만약 “GMO-free”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이를 100%를 보증하는가 여부이다. 표시에 대한 고려할 점으로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으로는 ①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생산한 모든 식품에 표시, ② DNA 또는 단백질 검출시에만 표시, ③ 소량 사용 식품첨가물(예; 제조보조제, 효소 등) 표시 여부(cf. EU는 최근 개정안에 이들에

대한 표시를 제외함), ④ 표시의 사료로 확대, ⑤ 종교적/윤리적 사안: 모슬렘의 경우 돼지고기 섭취 금지 등이다. Threshold도 많은 논란이 있는 사안으로 ① 결정 방법, ② 시장에서의 실행 가능성, ③ 검출법, ④ 유발적 함유 등이 이를 결정할 때 주요 논의쟁점이 되고 있다.

또한 표시의 확인에 있어서도 ① 문서에 의한 확인, ② 시험방법에 의한 확인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끝으로 GMO 표시문제에 있어 크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이에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이다.

▶ 미국은 GMO 표시와 관련하여 Codex에서의 강제표시는 반대하며, 자율 표시를 지지하되, 정부의 표시 규정 설정의 권한은 지지하며, 이에 있어 무역에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식품첨가물 일반 규격

(General Standards for Food Additives; GSFA)

▶ 미국의 Dennis Keefe(FDA)는 Codex 첨가물 분과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식품첨가물 일반 원칙 규격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GSFA는 특정식품군별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과 그 허용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특히, 동 문제는 23차 CCFAC 회의(1991)부터 논의된 것으로 장기간 논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이 강조되었다.

▶ GSFA와 개별식품규격에서의 식품첨가물 규정간의 관계가 모호하므로 혼동방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차기회의의 중요 의제로는 ① GSFA와 개별식품규격 중 식품첨가물규정과

- 의 관계, ② 식품분류표(Food category system), ③ 우선 논의대상 식품첨가물 선정 사항이다.

2002년중 주요 Codex 회의일정 및 주요 의제 요약

- ▶ 제8차 Codex Committee on Meat and Poultry Hygiene(2.18-2.22, 뉴질랜드) 식육제품의 위생 규범에 대한 새로운 규정초안 협의
- ▶ 제10차 Codex Committee on Food Import and Expor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s(2.25-3.01, 호주) 식품 수입관리 제도, SPS/TBT관련 조치의 동등성 평가 지침, 추적성 등
- ▶ 제3차 ad hoc Intergovernmental Task Force on Biotechnology(3.04-3.08, 일본) Biotechnology로부터 생산된 식품의 위해도 분석 원칙, 알려지 물질 평가, 추적성, 분석방법 등
- ▶ 제34차 Codex Committee on Food Additives and Contaminants(3.11-3.15, 네덜란드)
 - ◆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의 위해도 분석 원칙, 식품 첨가물 일반규격, 공정보조제 및 carrier, 활성 염소, 방사선, Ochratoxin A, Patulin, Aflatoxin, lead, cadmium, dioxin, chloropropanol 등
- ▶ 제5차 Codex Committee on Milk and Milk Products(4.08-4.12, 뉴질랜드)
 - ◆ 치즈의 일반 규격, 치즈의 최소 단백질 함량, 크림치즈
- ▶ 제17차 Codex Committee on General Principles (4.15-4.19, 프랑스)
 - ◆ Codex내의 위해도 분석 작업 원칙, 추적성, 정부의 위해도 분석 권고INGO와 관계, 집행이사회 재구성, Codex에서의 EU의 지위, 교역에서의 윤리 규범
- ▶ 제2차 ad hoc Intergovernmental Task Force on

Fruit and Vegetable Juices(4.23-4.26, 브라질)

- ◇ Codex의 주스 규격 개정 계획 설정
 - ▶ 제30차 Codex Committee on Food Labelling (5.06-5.10, 캐나다)
 - ◇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 추적성, 원료의 함유량 선언, 원산지 표시, 영양 및 건강 표시, 영양 표시 등
 - ▶ 제34차 Codex Committee on Pesticide Residues (5.13-5.18, 네덜란드)
 - ◇ DDT, 신규 농약에 대한 Codex 규범, MRL 설정과 관련된 섭취평가 등
 - ▶ 제25차 Codex Committee on Fish and Fishery Products(6.03-6.07, 노르웨이)
 - ◇ 정어리, 인증서, 냉동 바다가제, 훈제생선
 - ▶ 제10차 Codex Committee on Fresh Fruit and Vegetables(6.10-6.14, 멕시코)
 - ◇ UNECE 표준(전통적으로 UNECE에서 합의된 표준은 Codex에서 인정하고 있음), 토마토, 사과, 포도, 품질 및 인증
 - ▶ 제50차 Executive Committee of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6.26-6.28, 이태리)
 - ◇ 중기 계획, 의장활동계획, 관리 연구
 - ▶ 제13차 FAO/WHO (Codex) Regional Coordinating Committee for Asia (9.17-9.20, 말레이시아)
- 기타 논의 사항
- ① **위해도 평가 절차 규정**
 - ▶ 미국은 위해도 평가 절차를 법률로 정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 가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참석한 모든 국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미국도 USDA측은 정해진 규정이 없으나, FDA측은 Red Book에 위해도 평가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위해도 평가 결과의 심사(approval)은 누가 하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미국은 투명성을 높임으로서 해결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 개별 국가가 위해도 평가 실시가 어려운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미국은 국제기구(예; WHO)에 의한 지역 center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이집트의 경우 국제기구의 기본 자료를 사용하여 가정(assumption)만 다시 정하여 위해도 평가를 한 바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또한, 위해도 평가에 대한 DB 운영이 가능함을 지적하였다.

② **도하개발아젠다에서 SPS, TBT협정 개정 가능성**

▶ 도하개발아젠다에서 SPS협정과 TBT협정의 개정 가능성 여부를 질의한바, 미국 대표는 SPS협정에 대하여는 EU는 예방원칙과 animal welfare에 대하여 의견을 제기하는 등 논의가 있었으나 협정의 재 논의에 대하여 누구도 원하지 않고(feel discomfort) 있음을 설명하였고, TBT협정에 대하여는 일부 논의가 있었으며, working group수준의 작업이 가능할 수 있음을 전망하였다.

참석소감

▶ 본 워크샵이 현재 각 Codex 분과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사안들중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는 논의를 한 매우 유익한 자리이었으며, 개인적으로도 Codex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정도를 높이고, 현재 국제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

▶ Codex는 국제교역되는 식품의 위생, 표시, 첨가제, 유전자재조합식품, 유해물질, 병원성 미생물, 위험평가, HACCP 등 제반 기준·규격을 설정하는 국제기구로서 동 기구에서 설정되는 각 개별기준은 회원국이 준수하여야 하므로, 각국은 동 기구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자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응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 Codex 활동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정부차원에서 Codex 업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직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우선 농림부, 검역원 등 정부부서내에서는 전문인력 부족, 일상업무의 과중 등으로 Codex 세부활동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이 파악, 의제검토, 회의대응, 업무발굴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같은 우리부 유관기관에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조직틀을 구축토록 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 앞으로 우리나라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등 농산물의 공급 및 수출을 통한 농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식품의 국제적인 기준·규격업무를 담당하는 Codex의 중요성을 식품안전성 측면이나, 식품의 국제교역 측면에서 깊이 인식하여 동 기구의 업무활동에 더욱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